

## 무질서의 원질서\*

### 개인기록 정리에 있어 원질서 존중 원칙의 실효성 고찰

Disorder as Original Order : Theoretical Discourses of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for Personal Records

김수진(Kim, Su-jin) · 김유승(Kim, Youseung)\*\*\* · 류반디(Ryu, Ban-Dee)  
박진경(Park, Jinkyung) · 박태연(Park, Taeyeon) · 배양희(Bae, Yang-hee)  
신동희(Sinn, Donghee)\*\* · 윤은하(Youn, Eun-Ha) · 현문수(Hyun, Moonsoo)

1. 시작하는 글
2. 원질서 존중 원칙의 이론적 고찰
  - 1) 생산기관의 행정조직, 기능, 기록 조직과의 관계
  - 2) 원질서에서 질서의 의미
  - 3) 원질서와 기록 맥락
  - 4) 원질서 복원
  - 5)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 6) 원질서의 존중 원칙의 해석
  - 7) 개인 기록과 원질서 존중 원칙
3. 원질서 존중 원칙의 노근리 기록 적용
  - 1) 노근리 기록 : 무질서의 원질서
  - 2) 노근리 기록의 질서 찾기
4. 맺는 글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602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는 김수진(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유승(중앙대학교 교수), 류반디(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박진경(중앙대학교 석사), 박태연(전북대학교 아카이빙연구소 전임연구원), 배양희(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신동희(University at Albany 부교수), 윤은하(전북대학교 조교수),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가나다순)가 참여하고 있음. 본 논문의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 Associate Professor,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dsinn@albany.edu)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18일

## 〈초록〉

본 연구는 기록학 이론의 하나인 원질서 존중원칙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논하고 개인기록에 대한 적용의 실효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적용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개인, 가족 문서의 맥락성을 위한 이론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며, 노근리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원질서 존중 원칙의 실질적 적용을 고찰한다. 노근리 수집물은 정은용, 정구도 가족이 축적하고 생산해온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기록물에서 시작되는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의 정리를 위해 연구팀이 고민하고 탐구해온 내용을 소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원질서 존중 원칙의 실질적 영향과 적용을 노근리 기록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론의 의미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원질서 존중 원칙, 개인기록, 이론 분석, 노근리 기록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discourses about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It reviews the literature about the theory in the context of personal and family papers. The authors examin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in the case of the No Gun Ri archives. No Gun Ri collections started with the records that the Chung family's have accumulated and created.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Chung family paper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dentify a way to arrange No Gun Ri records.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to find a way to apply it to the No Gun Ri records.

**Keywords** : Principle of Original Order, Personal Papers, Family Papers, Discourse Analysis, No Gun Ri archives

## 1. 시작하는 글

원질서 존중 원칙(Principle of original order)은 기록학의 기본이 되는 원칙의 하나로 원질서, 원본질서, 원본순서, 원본순서질서 등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최정태 외 2005; 국가기록원 2007; 김상호 2007;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한미경, 노영희 2011). 일련의 연구들에서 원질서 존중원칙은 생산, 접수, 활용하였던 기록의 배열방식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해되고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으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론의 배경이나 의미에 대해 깊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일부, 기록관리 원칙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 논문과(노명환 2006) 기록 관리 원칙들을 담은 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설문원 2017), 원질서 존중 원칙을 집중해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많은 국내의 저서들이 공공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개인기록에 있어 원질서 존중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원질서 존중 원칙에 대한 국내외 담론을 살펴보고, 개인기록에 적용 시 그 실효성과 의미의 확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수행되었던 노근리 관련 기록의 정리, 분류 작업을 위한 원질서 존중 원칙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노근리 기록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한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 노근리 관련 기록은 그 가족이 생산한 기록으로부터, 그들이 활동했던 유족회, 사건 대책위, 또 더 나아가 그들과 유족공동체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노근리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록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노근리 기록을 정리할 수 없었고, 기록 정리의 주요 이론인 원질서 존중 원칙을 간과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와 탐구의 결과물으로써, 노근리 기록을 정리하는 데 함께 힘써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 전체의 연구 산물이다.

## 2. 원질서 존중 원칙의 이론적 고찰

원질서 존중 원칙을 기록학 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존 기록을 정리할 때 기록 생산자가 구축한 기록의 조직 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기록을 원질서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각종 관계 정보(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 기록과 업무 흐름 간의 관계 등)와 의미 있는 증거를 기록의 원질서로부터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을 이용하는 데 기록 생산자가 만든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보존 기록관이 새로운 접근 도구를 만드는 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170).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이하 SAA)가 엮은 용어사전은 원질서 존중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질서. 기록 생산자에 의해 결정된 기록의 조직과 순서.

비고: 원질서 존중 원칙은 기록의 기본 원칙이다. 기록을 원질서에 의해 관리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기록의 맥락에서부터 유추될 수 있는 기존의 관계성과 증빙적인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록 생산자가 기록을 이용했을 당시의 매커니즘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이용 방식(접근도구)을 만들어야 하는 일로부터 기록인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함이다.

원질서는 기록이 이관되었을 때의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분명히 잘못 정리된 문서들은 적절한 위치에 재배치 해야 한다. 기록의 원질서는 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장기간의 비활용시기 동안 가지고 있는 질서와 혼동될 수도 있다. [“원질서의 복원”을 참고하십시오.]

기록 생산자가 기록을 무작위 방식으로 저장하였다면 컬렉션 내에 의미있는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기록인들은 정리와 기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록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과해야 한다. 원질서 존중 원칙은 원래의 무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지 않는다 (Pearce-Moses 2005, 280-281).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의 정의는 원질서를 유지하는 이유에 더 초점을 두었고, SAA의 정의는 원질서 존중 원칙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른 개념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즉, 무질서의 상태로 있는 원질서는 존중해야 할 질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 기록 생산자가 부여하고 사용했던 질서라는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생산자가 부여한 질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생산자라면 기관에서 직접 문서를 서술한 생산자인지, 기관의 레코드 매니저인지, 질서라고 한다면 개별 문서생산자의 현용 당시의 질서인지, 레코드 매니저에 의해 운영되던 질서인지, 그 원칙의 목적은 기록 맥락을 유추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 기록과 기록활동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것인지 등 하나 하나의 의미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논의와 해석은 대체로 실무자 혹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환경과 기록체계를 설명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Eastwood 2002, 96). 따라서 기록 환경과 원질서 존중 원칙의 해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절대적인 법칙으로의 원칙보다는 실무에 준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 1) 생산기관의 행정조직, 기능, 기록 조직과의 관계

원질서 존중 원칙은 '네덜란드 매뉴얼'이라고 알려진 책의 저자들, Muller, Feith, Fruin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sup>1)</sup> '네덜란드 매뉴얼'의 Section 16에 의

하면, 기록의 정리는 원래의 기록 체계를 따라야 하며 원래의 기록 체계는 기관의 조직구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원질서라는 것이 기관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부서들의 구조, 즉 기관의 구조와 결을 같이 하며, 주제에 의해 문서들을 흠뜨려 분류하는 것보다 원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효용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Muller, Feith, & Fruin 2003, 52-59). 기록을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유기적 풍 구조에서 보존해야 하며, 그 출처와 원래부터 유지해온 기관의 질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기록의 조직을 기관의 조직에 견주어 질서를 찾았다.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원래의 정렬방식은 생산기관의 조직구조와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19세기 후반에 출판된 이 매뉴얼은 당시 네덜란드의 기록 생산, 보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생산된 기록의 양이 한정적이고, 고문서학의 테두리에서 분석해야 하는 중세 문서와 단순한 구조를 지닌 행정조직의 잘 설계된 등록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던 행정문서 환경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Cook 1997, 21). 그들은 기록이 원래 생산되던 행정적인 맥락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의 기록체계를 찾아내고 존중하는 방식이 가장 유용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추론은 출처주의나 풍 존중주의에서 기록의 의미적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 생산자를 근거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풍의 관점에서 의미적으로 묶이는 하나의 단위인 기록 컬렉션을 한 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로 보거나, 출처주의에 기반하여 한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들과 함께 섞지 않을 경우, 그렇게 모인 기록의 구조가 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관점은 기록 역시 기관의 계층구조를 그대로 닮아 계층구조를 가질 것으로 짐작한다. 기록들은 풍의 시리즈 속에 계층적으로 정렬되어 개념적인 계층구조 속에 물리적인 위치를 순차적으로 갖는다(Schellenberg 1961;

---

1) '네덜란드 매뉴얼'의 영문명은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이다. 원저작은 1898년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고, 그 후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이 1940년, 1968년, 2003년이다.

Holmes 1964).

원질서를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유기적인 질서이자, 기록인이 개입하지 않은 생산자의 작품으로 보거나, 기관의 조직구조와 기록의 구조를 동일시하여 원질서를 찾는 초기의 해석은 다수 후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Brothman(1991)은 기록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질서가 기관의 구조와 정체성을 온전히 구현해 낼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는 원질서, 출처주의, 기록군(records group)의 원칙은 기록을 둘러싼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단순화는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기록인들은 기관을 하나의 활동체(individual actor)로 비유하면서, 기관의 형태 및 구조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정체성인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정체성은 기관의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발현되고, 기관의 구조가 잘 드러난 원질서는 기관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며, 기관 내의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은 기관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보통의 원질서 혹은 특정시기 기록의 질서는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실체의 한 단면 또는 한 가지 버전만을 반영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맥락은 생략되기 십상이다. 사회적 변화, 기술적 변천에 따른 새로운 소통방식이나 비공식적인 관계들은 단순화된 기록정리 방식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특히 기록군의 체계에서 “자연스런 순서나 위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기록인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기록군 체계는 임의로 순서와 의미의 단위를 결정하므로 원질서와 출처주의의 기본 개념을 위배한다. 따라서 Brothman은 미국의 기록군이 과연 기관의 조직구조를 존중하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한 기록인이 이해하는 기관 구조가 과연 조직의 변천사를 다 담보할 수 있는지, 과연 이 방법이 역사자료로써 기록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일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Eastwood (2000)는 기록이 생산되어 보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것로부터 기록 정리가 시작된다고 하였지만, Brothman은 질서를 찾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것이다. 기록의 질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냉엄한 강제적 규칙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기록의 원초 질서는 기록을 그룹으로 묶는 실무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기록을 그룹으로 묶는 과정은 창작의 과정이다”(Brothman 1991, 84).

원질서 존중 원칙은 기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자가 부여해 놓은 체계나 배열이야말로 기록의 생산 맥락과 기록을 발생하게 한 활동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록, 기록의 맥락, 기록 생산자의 활동, 활동과 기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원질서에 녹아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들은 생산자의 기능을 기록 질서의 기초로 보기도 한다. Horsman은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이 말하는 원질서 존중 원칙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명제라고 설명하며, 원질서가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구조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 생산기관의 기능과 절차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당시의 기술의 형태였던 인벤토리가 변화하는 기관의 구조와 그 기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관 조직, 기능 요소, 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구조와 기록이 변화하지만, 당시의 인벤토리는 그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정 시점의 특정 체계 또는 주로 더 오래 남을 듯한 체계 중 하나를 선정하여 반영할 뿐이었다. 하이퍼링크, 복수 계층 구조, 기록의 철과 건의 링크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원질서 존중 원칙은 기관의 구조를 설명하는 최적의 방식이었던 것이다(Horsman 1999).

기능기술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Functions, 이하 ISDF)은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기능이 중요하다는 전제로 개발되었다. 즉, 기관의 행정구조보다는 기능과 업무가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다. 기능과 업무가 문서관리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

록의 정리와 기술의 기초이자, 기록분석과 검색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ISDF 2007, 7). 하지만 기록의 원질서를 이해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자의 기능이나 절차 등 하나로 규정되는 업무간의 경계는 사실 모호한 경우가 많고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쉽다. 하나의 기능이나 절차, 혹은 개별 활동을 하나로 범주로 묶어주는 과정을 식별하는 포괄적인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록물 하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겠으나, 한 기능과 다른 기능이 어느 지점에서 구분되는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개발된 ISDF는 기능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다.<sup>2)</sup> 같은 맥락에서, Bearman(1995)은 기능 간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Yeo(2012)는 기록의 생산자 혹은 레코드 매니저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되어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Zhang(2012)은 기관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정리방식이나 기록관리방식이 기관의 기록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능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고자 할 때, 기능 자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범주를 제공하는 원칙이 모호하므로 기록의 분류 역시 모호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능의 분석, 기능과 기록의 관계만으로 기록을 생산한 개인을 넘어서 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기능의 이해는 기록이 생산된 원래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기록은 과거의 생산 당시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의 업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큰 맥락에서 현상을 이해보자면, 과거의 그 기록이 사실 현재에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 기록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기능은 기록관

---

2) 이 표준은 기능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요소를 결정하고, 표준화된 접근을 제공하기위해 설계되었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요소에 따라 기능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관의 활동에 비추어 기술하도록 한다. 즉, 이들 요소에 의해 기능의 이름, 기능의 성격과 맥락, 한 기능과 다른 기능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되는데, 기능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는 표준을 활용할 수 없다. 즉,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설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역사적인 기능이다. 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달랐던 12세기의 예술작품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적인 가치보다는 역사적인 가치로 역할 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과연 기록의 기능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게 한다(MacNeil 2008, 21-22).

기록의 맥락을 통해 생산자를 이해하고, 생산자에 대한 이해의 일환으로 생산자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원질서에 접근하는 연구자도 있다. Meehan(2010, 35-36)은 기관의 조직과 기록의 조직을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나 기능과 기록을 단순히 일치시키면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록의 맥락에 집중한다. 그는 기록의 내적 관계성을 찾아 기록을 생산하게 한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하고, 기록과 생산자의 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질서의 본질이라고 논한다. 만일 생산자가 기록을 특정한 질서에 의해 유지, 보존하였다면, 그 원질서는 (1) 기록들 간의 내적 관계를 설명하고, (2) 생산자가 만든 단순 파일 체계나 정리 버릇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며 (3) 기록 전체의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기록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MacNeil(1994, 10)은 기록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의 기능, 행정 구조, 문서체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 내에 있는 기록 간의 관계를 내적 구조 또는 내적 관계라 명명하고, 기록이 생산자의 기능과 행정구조와 갖는 관계를 외적 구조 혹은 외적 관계라고 한다. 이들 간의 관계가 기록의 품을 결정하고 부분 부분을 형성한다. 이호신(2016)과 이해영(2013)도 원질서 존중 원칙을 기록 사이에 내재하는 논리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런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Zhang(2012, 183)이 분석한 사례에서 전자기록들의 원질서는 주로 기능에 따라 형성되어 있었고, 기록 간의 논리적 내적 관계 역시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내적 관계의 원질서를 통해 기록이 생산된 상황을 이해하려는 관점은 좀 더 확대되어, 원질서에 의해 정리된 기록을 통해 생산자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기록이나 고전 자료의 경우, 기록의 원질서를 통해 생산 당사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Douglas 와 MacNeil(2009)는 캐나다 유명한 작가들의 기록을 사례로 들면서, 작가의 기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는 작가의 성격이나 의도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기록을 통해 기록생산자의 “영혼 내면을 들여다 볼(glimpses of inner soul)” 수 있고, 이러한 잠재력은 원질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Douglas & MacNeil 2009, 28).

Cook(1997)은 현대 기관의 구조와 업무방식, 전자기술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혁신의 상황에서, ‘네덜란드 매뉴얼’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질서 존중 원칙을 원래 의미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계층의 복잡 구조를 가지 있는 현대 기관에서 기관의 구조와 기관의 업무 및 기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 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도 존재한다. 정보의 분산과 확산의 방향이 기관의 구조적 계층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기관의 행정구조, 기능, 업무 범위의 빠른 변화와 기록의 매체 변화에 따른 기술력의 발전 등은 기관의 구조를 안다고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관의 구조에 비추어 기록의 구조를 보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Cook 1997, 21-22).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산, 유통, 저장 과정과 진본 여부 확인과정, 복본 처리 절차 등이 종이기반의 환경과 완전히 달라진다. Dollar(1992, 50)는 기록의 맥락, 관계에 대한 정보는 기록에서 포착할 수 없고, 전자기록의 메타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맥락과 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의 경우는 데이터 디렉토리 등 기능, 조직, 기록 이외에도 더 보존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 2) 원질서에서 질서의 의미

Brenneke(1953; Horsman 2002, 2-3 재인용)는 원질서 존중 원칙을 그 의

미가 아닌 운영 방식의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네덜란드 매뉴얼’ 및 프리시아 기록 전통의 원질서 존중원칙에 대한 그의 비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원칙을 엄격히 따르는 것은 프리시아의 기록등록소(Registratur)의 영광스런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미 그의 시대에 이르러 문서를 관리하는 등록인(Registrars, 현재의 레코드 매니저)들은 필요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기록관도 과거처럼 철저하게 질서정연한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록인들은 등록인들이 제대로 질서를 갖추고 운영하지 못한 기록 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즉, 잘못 만들어진 기록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질서를 기계적으로 보존해서는 안되며, 기록인 스스로 창의적으로 질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Brenneke가 원질서를 등록인이 부여한 질서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이 말하는 원질서는 Brenneke가 주장한 등록시스템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물리적 질서로서의 원질서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시스템은 프리시아나 벨기에 등 당시 주변국가의 기록 등록시스템과 달리 공식적 등록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품이나 원질서는 비교적 덜 구조적이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이 말하는 원질서가 반드시 등록인이 부여한 체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Horsman(2002, 9)은 그들이 말하는 원질서는 기록의 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되는 원칙이지만, 품의 내적 질서에 특별히 더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논하였다.

체계의 엄격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질서 존중 원칙은 프리시아나 네덜란드의 등록시스템처럼 기록관 이전에 이미 기록들이 분류체계에 의해 정리되는 시스템을 갖는 나라에서 중요한 원칙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기록관에 이관되기 이전의 기록 분류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그 복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프랑스나 미국 등에서는 등록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 원질서란 등록시스템을 갖는 환경에서의 원질서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Duchein 1983; Horsman 2002). 따라서 원질서의 의미가 기관이 구조를 반영하는 질서인지, 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분류되었던 등록시스템의 질서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록이 생산되고 보존되는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 3) 원질서와 기록 맥락

본질적 의미에서 원질서는 기록이 전혀 손대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특권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Boles 1982). 실제로 원질서보다는 “수집당시의 질서(order as received)” 라든가 “누군가 개입했던 질서(order as disrupted)” (Powers 1983, 183), 혹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질서(order as last found)” (Galloway n.d., 3)의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한다. 기록은 생산으로부터 기록관에 이관되기까지 각자의 생애주기를 거치게 되고, 현용에서 준현용의 단계, 준현용에서 영구보존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이관, 정리, 수집, 선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존 연한에 따라 일부 기록이 폐기가 되면 기존의 질서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생산자의 캐비넷에서 문서고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환경의 맥락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번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록학에서 늘 중시하는 맥락을 기록인이 실무에 고스란히 반영하고자 한다면, 기록이 가지는 다양한 수준의 여러 맥락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모든 맥락이 다 드러나도록 실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의 바탕에 출처의 의미를 기록의 생산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박물관이나 고고학에서 보는 출처처럼 기록의 이관 이력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기록 이력의 역사는 각각의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모든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라면 출처주어나 원질서 존중 주의는 의미를 달리 한다. 원질서 체계가 단 한 번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기록의 생애주기 동안 재정리의 기회를 겪을 때마다 유지하고 있던 질서는 훼손된다. 일상적으로 흔하게 해왔던 실무인 기록을 사진이나 도면 등 형태에 따라 별도로 재정

리하는 것은 원질서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Barr 1989).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기록과 생산활동과의 관계, 다른 기록과의 관계, 선별과 정리의 과정에 적용된 기준과 이유 등을 포함시켜야 충분히 기록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질서는 이관 직전의 어떤 질서가 아니라, 매 과정마다 기록이 가졌던 질서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전통적 원질서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기록의 출처는 수시로 변하고, 기록의 주제는 역사의 관점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다는 입장에서 원질서 존중 원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변화하는 인식과 해석의 과정에서 기록인이 확신을 가지고 원질서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Nesmith 2006). 기록은 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여정 중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원질서로 채택되거나 유추되는 질서는 그 수많은 맥락 중 어떤 한 시점의 질서를 대표할 뿐이다.

복잡다단한 맥락을 가지는 기록의 원질서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기록인은 그래도 원칙을 실무에 적용해야한다. Barr(1989)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 당시의 생산자 시리즈를 존중하고 목록의 다양한 접근점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점의 원질서가 기록인이 존중해야 하는 원질서인가에 대한 물음에 Smith(1986)는 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마지막 활용 질서(final active order)”를 원질서로 보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 활용 질서는 최소의 기록관리업무 패러다임<sup>3)</sup>에서 다시 각광을 받기도 했다(Galloway n.d.). Barr와 Smith 모두 복잡한 여러 차원의 맥락을 실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안한 방식이다. Nesmith(2006)는 실무에 있어서 기록이 기록관에

---

3) Mark Greene과 Dennis Meissner는 2005년 *American Archivist*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기록관에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는 보유기록들이 기록관의 이미지를 해치고 기록과 기록관의 존재이유를 호도한다고 호소하였다. 이들의 논문은 기록학계와 현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최소한의 기록업무(More product less process, MPLP) 운동으로 확산되었다(Greene & Meissner 2005).

이관되는 시점에 나름의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편이상 기록인이 인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질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관 시점의 질서는 원질서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에 포착된 질서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Smith와 Nesmith의 차이라면, 둘 다 원질서 존중 원칙에 의해 이관 시점의 질서를 채택하지만, Nesmith는 그것이 원질서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Meehan(2010, 20-21)은 개인기록의 경우, 원질서에서 꼭 표현되어야 하는 맥락을 ‘기능 맥락’과 ‘광역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기능 맥락’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개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며, ‘광역 맥락’은 기록인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기록의 생산, 유지, 이전, 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체로서의 맥락을 의미한다.<sup>4)</sup> 즉, ‘조직’뿐만 아니라 생산, 매체 변환, 전송, 유지, 저장 등의 과정동안 정보 및 맥락의 ‘축적’을 포함하는 질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인과 이용자까지도 기록의 맥락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Meehan은 원질서 존중 원칙의 문제점을 3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원질서 존중 원칙은 기록관리 체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링 시스템에 중점을 두면서 설명하므로, 생산자가 부여한 자료의 ‘조직(organization)’ 혹은 ‘정리’라는 개념에 집중한다. 이 관점은 생산 이후 기록의 유지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축적 (accumulation)’ 부분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원래’의 ‘질서’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이관 받은 기록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기록인이 구현해내

4) 광역맥락의 영문표기인 broader contextualities는 Meehan이 Nesmith의 다양한 과정 (varied processes)이라는 용어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Nesmith는 기록인의 임무가 기록을 무결한 진본으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 생산자가 처음 의도하고 생산한 이후, 기록이 어느 만큼 “다양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생산 이후 다양한 과정을 증명하는 기록이 현재 기록인이 다루는 기록인 셈이고, 다양한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기록의 ‘생산’에 포함된다. 즉, 기록에는 생산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을 객관적 사물로써 기입, 전송, 개념화 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적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마다 기록은 새롭게 ‘생산’된다.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기록은 어떤 증명을 하고 있고, 어느 수준의 신뢰성과 진본성을 보여주는 것일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는 질서가 원래의 질서일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다. 세번째 문제는 기록 내에 질서라는 것이 전혀 없을때, 원질서 존중원칙은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생각해야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주지못한다는 것이다 (Meehan 2010, 20-21).

#### 4) 원질서 복원

원질서와 관련한 또 다른 논쟁점은 원질서의 복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서를 가정하고 세워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원질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 후에 원질서에서 파생하는 다른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원질서를 변형하거나 개선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기관의 구조를 파악해서 생산된 기록의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기본이 되는 큰 골격을 알아내야 그로부터 파생하는 질서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Section 17, 59-62). '네덜란드 매뉴얼'의 저자들은 만일 기록을 생산한 사람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질서를 부여하지 못하였거나, 보존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원질서가 수정되었던 경우라면 기록의 원질서는 수정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Section 18, 62-64).

하지만, Duchein은 역사가, 고고학자, 기록인 혹은 세월이 헤쳐놓은 원질서를 선불리 재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리고 없는 기록의 구조를 복원하는 일은 과도한 상상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풍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서를 복원하는 일은 사실 풍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 이론과 실무에서 풍의 내적 구조는 분명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를 알아내는 일은 중요하지만 구조의 원칙(principle of structure)을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법적 근거의 변화에 따라 기록의 내적 구조는 분명 바뀔 것이고, 심지어는 생산기관에서 내적 구조 자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변화하는 내적 질서를, 존재하지 않는 내적 질서를 기록인이 임의로 만들 수 없다(Duchein 1983, 76).

원질서 복원 논리 중 하나는 원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기록이 가지는 증거적 가치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기록인들이 최대한 원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에 의해 부여된 기록의 질서는 기록의 내용과는 별도로 생산자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질서가 제공하는 생산자와 생산자의 조직에 대한 정보는 기록이 ‘증거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배경이 된다(Boles 1982, 29). 기록은 다른 기록들과 기능적 관계를 갖고 그 관계에 따라 생산자의 활동을 증명한다. 기록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생산자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Turner 1992, 28). 즉, 기록은 생산 맥락이 주는 정보, 다른 기록과의 관계, 또 기록과 생산자의 기능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기관의 기능과 절차를 증명한다. 증거로서의 온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의 원질서, 이관 당시의 질서, 혹은 기록으로 유추하는 생산기관의 기록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MacNeil 1994, 9).

증거적 가치를 위한 원질서 존중에 대한 생각은 Jenkinson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Jenkinson(1922, 12-13)이 말하는 기록의 가치인 불편부당성과 진본성 중 진본성은 기록이 공식기관에서 공식절차를 거쳐 유지될 때 보존되는 가치다. 즉, 기록과 기록생산기관, 보존기관과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공적인 절차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진본성의 가치가 구현된다. 진본성을 위한 기록생산과정의 투명하게 드러나는 체계는 나아가 원질서 존중 원칙으로 이어진다. 지난 세기 주류 기록학 연구자들은 단절없는 기록 이력(unbroken custody)과 기록의 원질서를 통해 생산자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정보로서 기록을 보존하고자 했다(Cook 1997). 설문원(2003) 역시 기록이 조직과 개인의 활동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질서를 찾아내야 하므로 기록 생산시점의 조직의 구조와 논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조선 총독부에 남아 있는 기록

을 토대로 당시의 기능과 조직의 구조를 유추해 분류체계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원질서를 온전히 복원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원질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 기록 연구자들은 이용자의 관점에 주목하며, 원질서가 이용을 장려하는 수준의 질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관점에서 원질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원질서로 보이는 질서가 의미있는 질서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혹은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질서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Kane 1966; Boles 1982). 이러한 사고는 미국 공공기록의 기초가 확립되던 시기에 제시되었던 Schellenberg의 정보적 가치 이론에 근거한다. 원질서 존중 원칙이 ‘이용’과 ‘편의’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현용시절의 기록 시리즈와 정리 방식이 기록관에서도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기술하기 위해 쓰일 수 있을 때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인은 기록 내의 질서를 찾아 시리즈를 정하고 재정리해야 한다. 기록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리 작업을 회피하거나 마음의 가책으로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chellenberg 1961, 23-24).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는 분명 서로 다른 맥락에서 기록을 바라본다. 따라서 생산자의 맥락이 반드시 이용자의 맥락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기록관 이용자들이 기록에 접근할 때 출처보다는 주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Dooley 1992; Duff & Johnson 2003; Schaffner 2015), 이용자들에게 원질서가 반드시 유용하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서나 쉽게 기록을 찾아보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용자가 직접 가상의 컬렉션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스스로 이용 맥락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주제에 맞는 컬렉션을 만들 수 있고, 가상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기록이 여러 컬렉션에 속하게 할 수 있어 여러 맥락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Yeo 2014). 이용의 편의를 위해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배열할 수 있으나, 그것 역시 기록인의 인식의 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용의 맥락을 살펴보려면, Yeo가 이야기 하는 시스템 상의 이용자 콜렉션과 그 질서를 분석하여야 한다. 기록인이 유추하는 이용의 맥락 역시 원질서를 유추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또한 기록인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 어느 특정 상황의 맥락인 셈이다.

## 5)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기록의 배열, 순서, 질서의 개념은 물리적 기록과 직접 관련이 있다. 어떤 기록이 다른 기록보다 선행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물리적 기록의 위치에 관한 개념이다. 원질서라는 개념 자체도 문서로서의 기록 시대에 나온 원칙이고, 원질서 존중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원질서 역시 실물로서의 문서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질서에 대한 논의는 실상 실물로서의 종이 기록의 정리와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Miller 1990 27; MacNeil 1994, 10). 종이 기반 기록의 경우, 한번 특정 범주, 시리즈, 기능에 속하게 되면, 가능한 다른 방식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통적 환경에서 기록인은 기록을 기능 구조에 따라 모으고 정렬한다.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병치 정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록인들은 원질서라고 믿어지는 하나의 질서에 따라 정리한다. 하지만 기록인이 믿는 원질서는 기록을 임의로 하나의 범주에 강제한다(Yeo 2014).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하나의 질서만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진다. 원본과 복본의 차이가 없는 세계에서 기록은 원질서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질서에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Michetti(2012, 1009)는 계층구조로 기록을 이해하는 것은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의 한 단면만을 보여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래의 기록관은 “기록은 서로 느슨히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서로 새로 연결될 수도 있는 세계”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리적 형태를 지닌 기록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

다. 기록을 생산, 운영 환경에서 보존 환경으로 옮길 때에 생기는 혼란 역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원질서, 기록 배열, 정리 방식을 유추하기 쉽다. 전자 환경에 비해 종이형태의 기록은 기록 생산맥락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좋은 환경이다(Yeo 2014). 반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문서의 경우,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관 중에 변경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Suderman(2002)은 전자기록에 대한 맥락과 질서는 수집, 평가, 기술의 기록보존 과정에서 온전히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진본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표준화된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 나아가 거대 기관의 전자환경에서는 생산 이전의 정책과 기록 체제의 설립에서부터 진본과 증거를 담보하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ook 1997, 45-46). 원질서 하나만으로는 기록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

전통적으로 원질서는 기록의 질서를 찾는 과정으로, 기록 하나 하나를 컬렉션에서 하나의 시리즈 속에 각각의 물리적 위치를 정해주는 개념이었다면, 현대의 원질서는 복수의 생산자와 복수의 독자들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개념적인 혹은 가상의 질서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록은 하나가 아닌 여러 원질서(시리즈)에 속하게 된다(Cook 1997, 48).

원질서 존중 원칙의 근간에는 원질서가 단 하나로 존재하는 생산자의 고유한 정리방식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원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객관적인 고유 질서가 아닐 뿐더러, 기록인이 생산시에 있던 질서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묶이고 철해지고 옮겨지면서 질서는 훼손되고 변경된다. 이런 관점에서 원질서를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록인의 의무는 실패한다(Yeo 2014, 173-174). 디지털 기록은 현용상태에서 이미 복수의 가상 질서를 가지는 일이 흔하며, 매체에 처음 저장되는 시점의 물리적인 질서를 그대로 가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Galloway n.d.).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은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 없이 복수의 가상 범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원질서라는 임의의 질서에 강제하여 하나의 접근만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이용자의 맥락에서 주제, 유형, 장르, 지명, 시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주에 종속시켜 접근점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원질서 존중 원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실제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에서 메타데이터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시스템의 경우, 기록은 하나의 원질서가 아닌, 여러 방식의 질서 속에 속해져 있음이 드러났다. 전자기록의 복잡한 관계구조로 인해, 원질서가 복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Zhang 2012, 185).

## 6) 원질서의 존중 원칙의 해석

기록관에 이관된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원질서가 기록의 맥락과 기록생산을 도출하는 활동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원칙이 존중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중요한 논쟁점이었다. “차후에 부여된 질서는 원래의 무질서보다 중요하다(Unoriginal order usually trumps original disorder)”라는 Huth의 주장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기록인이 실무를 하다보면, 실상은 원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원질서가 무엇이었을지를 ‘찾아내는 것’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되기 쉽다 (Powers, 1983, 184). 원질서 존중 원칙은 원질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질서로 유추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유사하다고 기록인들이 인지하는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이 된다. 설문원(2003, 465)은 기록이 생산되었던 시점의 질서를 알아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록관리 원칙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록이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록관리의 원칙도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던 시점의 질서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질서를 유추하고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질서 존중 원칙은 구체적인 실무의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규범으로서 참고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실무 적용에 적합하다(Gracy 1977; Boles 1982). 이런 견지에서 원질서 존중 원칙이 실무에서 나름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기록인들에게 유용한 원칙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Boles 1982, 29). 실무에 있어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출처, 원질서, 연도순 등 여러가지 정리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한다면, 기록의 정리배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Bordin & Warner 1966; Boles 1982 재인용). 이호신(2016, 170)은 공연예술기록을 중심으로 기록 정리원칙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논하면서 다중의 출처를 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원질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상적인 개념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연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계열화하는 방식으로 원질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개인 기록과 원질서 존중 원칙

정부나 기관의 기록을 다루는 기록인들은 원질서 존중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개인기록을 다루는 기록인들은 이 원칙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다. ‘네델란드 매뉴얼’에서 원질서 원칙은 기관의 공문서 위주로 설명되고 있고, 개인기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 원질서 존중 원칙을 개인기록이나 작은 매뉴스크립트 장서에 준용해야 하는 상황에 활용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은 1977년 SAA에서 출판한 *Gracy's Basic Manual Series Archives and Manuscrip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Boles 1982, 26). 원질서 존중 원칙은 사실 그 해석의 폭이 좁고, 개인기록을 다룰 때는 기관 기록과는 달

리, 기록 체계나 기관의 조직, 기능 등 비교해 볼 전자내용이 없으므로 기록인들이 회피하기도 했다(Duckett, 1975). 일부 학자들은 개인기록에서 나름의 원질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드러내 줄 수 있을 때에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Powell 1995; Meehan 2010재인용). 혹은 적용한다고 해도 이용자의 요구로 정당화 된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믿었다(Kane 1966).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은 기록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이들은 분명하게 그 원칙을 거부하기보다는 규범적인 의미로 기록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나름의 기본 질서를 찾는 정도로 합의하여 사용해왔다(Boles 1982, 26). Hurley (1995; Meehan 2010 재인용)는 개인기록에 있어서 원질서는 파일링 체계나 검색 체계로써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개인 기록의 원질서를 기록 속에 이미 존재하는 나름의 질서가 해당 기록의 역할과 목적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고고학의 발굴작업에 비유한다. 땅 속의 유물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굴되는 유물 하나하나 각각의 의미와 관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고고학 발굴원칙들을 준수하듯이, 기록의 원질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acNeil은 원질서 존중원칙이 기록물의 진본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설명되는 점을 지적한다. 기관의 기록은 사실성과 진본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원질서 존중원칙이 필요했지만, 개인기록, 예술기록, 문학기록 등 일반적인 문화기록은 진본성을 구현하기 위한 식별과정이나 안정적인 절차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질서 존중원칙을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식 그대로 문화기록에 적용할 수 없다. 문화기록들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 관리인의 권한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과 맥락에 놓여지고 반복적으로 해석된다(MacNeil 2008). 전통적인 기록학 이론가들은 생산자 이외의 주체가 부여한 의미(혹은 새로운 의도에 의한 개입)를 부정하므로(Jenkinson 1922), 기록인들은 기록과 생산자 간의 주요 연결점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원질서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이 기록의 의미와 진본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생산자의 분명한 의도가 원질서 구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원전비평(text-criticism)의 관점에서 MacNeil은 기록의 의미와 진본성은 기록 자체와 기록과 상호작용하는 관리기관(custodial authorities)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기록인과 기록관도 유수한 시간 동안 기록의 관리기관으로 역할하며, 기록의 진본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록 역사의 일부로 중요한 의미를 더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Archivalterity’라고 칭하며 시간과 공간을 지나면서 기록 풍의 의미와 진본성을 형성하는 지속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개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인들이 하는 실무를 봤을 때, 실제로 기록인이 이해하는 기록의 특성 및 질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식은 현재의 구체적인 편의에 기반한다. 이론가들의 주장과 실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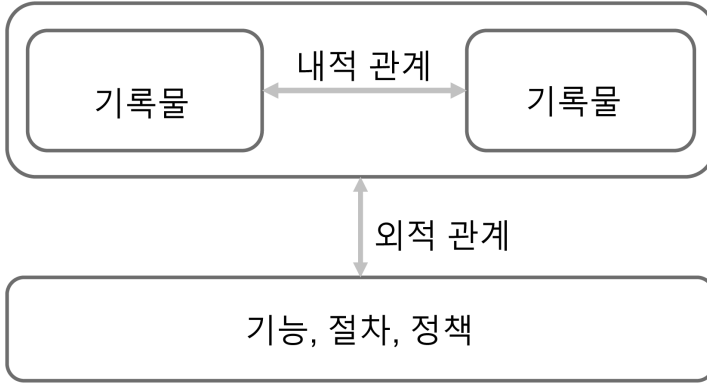
이렇듯, 원질서 존중 원칙을 개인기록에 적용했을 때의 실무는 원칙 그대로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원칙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변형하거나 수정해서 활용하는 한가지 근거는 이용자다. 이용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기술하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이용자 그룹별로 시대별로 기관별로 정리와 기술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유용한 정리 기술 방식을 예상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원질서 존중 원칙의 적용을 변형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은 개인기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사용할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맥락을 구현하며 기록의 물리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기록학 원칙을 전반적으로 부정한다. 정보의 접근과 검색에 중점을 두게 되어 개인기록의 맥락이나 관계에서부터 도출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근거한 검색은 불가능하다(Meehan 2010, 33).

원질서 존중 원칙을 개인기록에 적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개인 기록을

마치 기관의 기록인 것처럼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기관의 기록생산 맥락과 개인의 기록생산 맥락에서는 여러 차이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기록을 유지하는 과정과 기관이 기록을 다루는 관리 이력은 분명 다른 과정이자 다른 개념이다. 또한 개인기록의 경우 평생을 특정한 방식이 없이 유지되다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시점에 처음 질서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서에는 기관에서 말하는 ‘이관시점의 질서’ 혹은 ‘마지막 활용질서’ 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개념의 간극이 발생한다(Meehan 2010, 32).

개인기록에 있어서 원질서 존중 원칙을 광의로 해석해 보자면, 기록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개념의 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기록들이 보여주는 질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경우도 이 원칙을 개념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Meehan(2010, 36-37)은 기록인이 기록과 생산자 간의 관계, 혹은 기록과 생산활동과의 외적 관계를 통해 기록 자체의 내적 관계를 탐구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면서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에 원질서 존중 원칙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이 보여주는 기록 간의 질서를 내적 관계, 기록과 생산자의 기능, 활동과의 관계를 외적 관계라고 한다(그림 1 참고). 만일 의미있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기록인은 기록의 내적 관계를 통해 기록의 외적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원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록인은 기록의 외적 관계를 연구하면서 내적 관계를 유추하게 된다. 후자의 방식은 원질서를 실무단계에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큰 틀을 제공하는 외적 관계를 통해 내적 관계를 그리는 개념의 틀로 이해한다. 생산자의 활동과 기록 간의 외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기록의 질서, 혹은 기록 간의 내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원질서 존중 원칙은 그러므로 기록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외적 관계를 통해 내적 관계를 구성해보는 방식, 관점, 혹은 방법을 이끌어내는 거시 체제로 이해된다.

〈그림 1〉 Meehan의 기록물 관계 도식



### 3. 원질서 존중 원칙의 노근리 기록 적용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퇴각하던 미군이 노근리 일대의 양민을 무고히 학살한 사건이다. 반세기 가까이 은폐되었던 이 사건은 1999년 AP의 탐사보도를 계기로 비로소 국내외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Choi, Hanley & Mandoza 1999). 하지만 노근리의 참상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기 이전부터 생존자,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이를 알리려는 수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들 희생자 공동체의 구심점에는 정은용, 정구도 가족이 있다. 이들 부자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노근리 유족회,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 등에서 주도적 활동을 펼쳤다. 당시의 기록은 후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되고(2004), 노근리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이 세워지면서 그 곳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 1) 노근리 기록 : 무질서의 원질서

정은용과 정구도는 열성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였다. 지난한 시간 동안 그들은 노근리 사건을 알리고 공론화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집하였으며, 수많은 노근리 관련 자료를 만들어냈다. 기자들을 만나 노근리 취재를 독려했고, 인권단체들과 연대해서 노근리를 알리고자 했으며, 미국정부에 소송을 준비했다. 정부보고서에 대해 반박문을 만들고, 정치인들에게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보냈다.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를 개최하고, 학술제, 문학제, 인권캠프 등을 열었다. 이러한 열성적 활동의 이면에는 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고 수집된 기록이 있다.

정은용, 정구도가 중심이 되어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활동을 하는 동안, 유족회, 대책위 등에서 생산하고 수집해 온 기록들은 모두 이 두 부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유족회나 대책위와 같은 노근리 관련 제반 단체들이 실물의 기관으로 독립된 공간과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되지 못했으므로, 관련 기록들은 정은용, 정구도 부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었다. 기록의 정리나 선별은 고사하고,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증언한다. 한때는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의 습기와 햇볕을 그대로 받았고, 한때는 사무실의 지하창고에 방치되었다고 한다.

정은용, 정구도는 열성적 기록 생산자였으나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열성과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요 기록 전략이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노근리 평화공원의 수장고에서 발견한 것은 무수히 많은 복본들이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기록을 스캔하여 아카이브에 수록하기 위해 노근리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구도

를 찾아 갔다. 그 곳에서도 연구팀은 창고와 다름없는 수장고를 만나게 되었다. 정은용, 정구도 개인기록과 유족회, 대책위, 노근리 평화공원의 기록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고, 수장고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록관리, 보존에 대한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향온향습기는 꺼져 있었고, 보존용 도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반 하드보드 상자, 심지어는 소포용, 과일상자 등으로 쓰던 상자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많은 기록들이 낱장으로 방치되어 상자 속에서 뒤엉킨 상태로 구부러져 있었다.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습기를 잔뜩 머금었고, 서류철의 금속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사진이나 신문용지같은 재질의 기록은 더 심각한 상태로 열화되었다. 테이프으로 붙여진 부분은 접착제의 열화로 황변되었다. 테이프조차 떨어져 문서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별첨 문서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순서와 배열이 제대로 존재하는 문서를 찾기 어려웠다. 일부 영동군에서 수집해서 정리한 노근리 관련 기록들이 서류박스에 담겨져 같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는 관련 도서, 논문, 신문 기사, 자료집 등을 포함한 노근리 자료들로서, 실제로 이용 및 운용되고 있지 않았다.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기록은 내용적으로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기록은 출처 구분없이 섞여서 보관되어 있었다. 일부는 서가에 그대로, 일부는 상자에 무작위로 담겨 있었다. 기록의 주 생산자였던 정구도는 자신의 집필, 사건 진상조사 활동, 언론 보도문 작성, 각종 소청과 진정, 성명서 작성, 강의 준비 등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 수집하고 작성한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매우 많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버전의 문서들은 통제되지 않아 초안과 수정안, 최종본을 구분할 수 없었다.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기간도 길지 않아, 기존 기록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평화기념관의 문서들 역시 적절히 보존되지도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평화기념관 근무자 중 기록학 혹은 박물관학 전공자는 없

었다. 직원들은 기록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록관리, 박물관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어 관리 방식에 대해 어떤 논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정은용의 기록이었다. 정구도는 부친인 정은용의 별세 후 그의 자료 중 많은 부분을 따로 바인더에 모아 클리어 파일로 정리해두었다.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의 주역인 정은용의 자료들 중에는 노근리를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부터 당시의 사진, 수많은 진정서들까지 오래되고 중요한 기록이 많다는 정구도씨의 판단이었다. 덕분에 총 75mm바인더 7권, 쇼핑백 하나, 그리고 박스 한 두개 분량의 정은용 컬렉션은 비교적 구분하기 쉬웠다. 정은용의 기록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는 했지만, 내부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순서나 정황에 상관없이 정은용 소장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던 것 이상의 어떤 개입도 없었다.

정은용 컬렉션의 경우는 종이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원고지에 작성된 기록도 상당수였다. 노근리에 대한 신문기사나 관련 자료들은 복사된 상태로 존재하기도 했다. 정은용의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실화소설이 노근리를 공론화시키는 직접적 도화선이었는데,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교정과 교열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부의 편집본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가족의 사진앨범이나 개인적 물건들도 보자기에 쌓여 기록들과 함께 있었다.

그 외의 기록은 정구도의 기록인 것으로 연구팀은 파악하였다. 달리 유족회라든가 대책위라든가 하는 단체의 기록을 구분해낼 방도가 없었다. 따라서 남은 기록들 중에 당장 평화공원에서 현용문서로 추정되는 기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구도의 기록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정구도의 기록은 평화공원 수장고 안에 산개되어 존재했다. 상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탄원서와 회의록으로부터, 서가에 폴더 채로 누워져 있던 문서, 사진, DVD 등 기타 물품, 그리고 외장하드 4개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은 정확한

양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정구도의 기록 역시 많은 복본이 존재했다. 종이 복본에 전자문서들의 복본까지 많은 복본이 있었다.

정은용 컬렉션, 정구도 컬렉션으로 이름을 붙이기는 했으나, 기록의 내적 질서로는 ‘무질서’가 연구팀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질서였다. 연구팀이 기록을 디지털화하거나 전자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초적인 정리를 수행해야 했다. 정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기록을 들여다 보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구도 컬렉션의 경우, 개인기록과 유족회, 평화공원 등 여타 단체가 남긴 기록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다. 어느 문서가 정구도 개인이 작성한 것이고, 어느 것이 평화공원에서 생산한 것인지 서로 섞여 있어 물리적으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으로 교회 또는 경영학 연구를 위해 작성한 문서들과 노근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간혹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도 있었다. 예를 들면, 노근리에 관련된 활동을 교회에 간증을 위하여 준비된 문건이 노근리 파일에 함께 있었다. 또한 이것을 발전시켜 노근리 진상규명 활동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기고문들도 있었다. 이렇듯 개인영역의 기록과 공적 활동 영역의 기록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둘째, 노근리를 주제로 한 기록들 중에서도 정구도 본인이 평화공원의 평화기념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적으로 만든 문서와 다른 역할을 하는 과정 중에 작성한 문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정구도는 평화기념관의 관장이면서,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현재의 직함뿐만 아니라, 과거 대책위 활동 때의 역할에서 생산한 기록도 있었다. 같은 단체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실례로 노근리 관련 행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많은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같은 행사를 유족회, 인권연대 등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제1회 노근리 대학생 인권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국무조정실 등 여러 곳에 지원서를 제출

하고자 작성하였다. 남아있는 복수의 지원서를 보면, 인권캠프 행사도 처음 지원할 당시는 노근리 문화대학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원서를 작성한 단체는 노근리 유족회, 노근리 인권연대 등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원서가 존재했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복본이 서너 개에서 수십 개씩 존재했다. 같은 상자에 있기도 하고, 다른 상자에서도 같은 복본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같은 문서가 여러 외장하드에 존재하기도 했다. 전자문서의 경우, 복본이 많을 뿐 아니라, 한글파일, 워드파일, pdf 등 다양한 형태의 복본이 있었다. 컴퓨터나, 외장 하드 등을 새로 구입할 때마다, 이전 기기에서 전체 폴더를 그대로 복사, 혹은 폴더 별로 여러 복본 만들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전자 기록의 정리는 연구팀에게 예상치 못한 큰 과제가 되었다. 연구팀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록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복본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기 어려워진 정리 작업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넷째, 기록을 생산할 당시, 파일 이름이나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수많은 버전의 파일들이 혼잡하게 존재하였다. 초본, 수정본, 최종본 등에 대한 버전 파악이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여러 번의 기기를 거친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프린트 복본들과 디지털 복본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가운데,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매체를 달리 하는 문서들의 복본 관리, 버전 관리는 더욱 어려웠다. 또한 문서 수정시 프린트에 필사로 수정한 후, 전자 문서를 수정한 경우, 어느 만큼 전자문서들이 수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필사의 수정본과 전자상태의 수정본 중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에 대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 2) 노근리 기록의 질서 찾기

노근리 컬렉션들 중 주가 되는 정은용, 정구도 컬렉션은 개인 기록이다.

하지만, 이들은 유족회나 대책위 같은 단체에 속해 생산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존재의 근거가 분명한 곳들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단체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모두 이들이 가지고 보존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포함하는 정은용, 정구도 컬렉션이 기록들은 개인기록이므로 원질서를 위해 참고할 법적으로 혹은 내규로 결정된 기능과 절차 등은 찾을 수 없다. 개인이 가져왔던 사회적인 역할들을 바탕으로 (원)질서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기록에서는 어떠한 질서나 관리 방식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무질서의 원질서인 개인 기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연구팀의 노근리 기록들을 살펴보고 수집하면서 시작한 최초의 작업은 수집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시키고 어떤 것들은 배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목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했고, 실제 수집과 선별 작업은 한참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또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수록할 기록에 대한 수집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록을 선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집정책도 마련하게 되었다(신동희, 김유승 2016). 수집정책에 명시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수록될 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999년 AP에 의해 사건이 보도되기 이전,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했던 활동을 기록하는 내용 (예: 진정서, 청원서, 문학작품 활동, 언론사 정보제공활동, 유족회/사건대책위 활동 등)
2. 1999년 AP 보도 이후 2004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는 내용 (예: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노근리 공론화 과정의 신문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사건대책위의 미국소송 활동, 관련 학술논문 등)

3. 2004년 특별법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평화공원을 주축으로 하는 추모 활동, 사회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노근리 기억, 피해자 배상을 포함하는 희생자 명예회복심사 활동, 사건 재조사 촉구활동 등을 기록하는 내용 (예: 학술문화제, 위령제, 세계대학생 인권캠프 등 노근리 평화공원 활동 기록, 노근리 평화공원 출판물, 노근리희생자명예회복 관련 출판물, 노근리를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만화, 사진 등)
4. 노근리의 역사,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문화 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근리의 기억과 이해 (예: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증하는 이용자들의 기록)

물론 실제 연구팀이 검토한 기록은 상기에 나열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과 종류의 기록이었다. 수집정책의 목적은 노근리 사건을 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록 범위의 경계선을 명시하기 위함이었다. 실질적인 수집 및 선별 과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정은용, 정구도 컬렉션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선별의 기준이 필요했던 기록 중 하나는, 개인기록과 평화공원 기록의 구분이었다. <노근리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에 의해 평화공원이 설립되었다. 평화공원 설립 직후 몇 년의 문서는 정구도 컬렉션에 포함시켰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뚜렷이 기능이 구분되는 조직이 아니고 조직보다는 개인의 활동 역량이 더 큰 노근리 평화공원의 환경에서 기록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노근리에 상근하는 기록관, 박물관 전문가가 없고 지난 몇 년간 직원이 지속적으로 바뀐 상황이라, 업무 지속성이 낮고 문서를 활용하는 현용단계에서도 실질적 활용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평화공원 초기의 기록은 정구도 컬렉션에 편입시켜 정리하였다. 하지만, 평화공원에서 제작한 도서들이나 자료집들은 정구도 컬렉션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연구팀은 노근리 기록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Meehan의 이론을 참고하였다. 원질서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기록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의 틀로, 기록 간의 내적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생산자의 기능과 역할의 외적 요인과 기록 간의 외적 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정구도 콜렉션 을 한데 모으고 검토하는 과정에 정구도가 생산한 기록 하나를 찾았다.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기술한 기록이었다. 이로써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구도 및 유족회, 사건대책위의 전체적인 활동을 대략의 시기와 활동의 성격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기록을 생산하게 한 상황과 맥락을 보여주는 활동(역할, 기간) 간의 관계(외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 명시된 노근리 관련 활동의 범주는 <표 1>과 같다. 각 활동별로 약간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범주 안에서 기록의 내적 관계를 아주 작게나마 추측해볼 수 있었다.

<표 1> 정구도 콜렉션에서 발견한 문건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열거된 활동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활동
1. 1960년대 미군소청사무소에 대한 소청
2. 문학활동을 통해 표출된 초기 진상규명
3. 노근리사건대책위의 결성과 활동
4. 노근리사건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5. 국내외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6. 국내외 인권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7. 한미 양국정부 조사와 관련된 활동
8. 입법을 위한 활동

이 기록에는 노근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과정 중의 활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문건의 생산 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입법을 위한 활동’이 마지막 활동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전후로 추정된다. 미국 변호사를 통한 소송활동, 평화공원 설립운영, 노근리와 관련된 문화 행사 등 2004년 입법 이후의 활동들은 문서에서 결락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에 빠져 있는 활동에 해당하는 기록들도 포함할 범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상기 문서의 범주들과 기록에서 드러난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정구도 콜렉션과 정은용 콜렉션의 기록을 정리할 분류로 총 10개의 다음과 같은 기록시리즈를 결정할 수 있었다. 기록시리즈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2> 정구도, 정은용 콜렉션의 기록시리즈

기록시리즈
1. 사건 관련 진정, 소청 활동
1.A. 1999.9 AP보도 이전, 진상구명을 위한 각종 소청 활동
1.B. 1999.9 AP 보도 이후, 각종 소청 활동
1.C. 2004년 특별법 이후 진정, 소청 활동 (피해자 보상, 명예회복, 사건 재조사 등)
1.D. 미국변호사를 통한 보상, 사건 재조사 촉구활동
2. 사건의 공론화 활동
2.A. 초기 문학활동 등을 통한 공론화 활동 (1977, 1994, 1998 소설 등)
2.B. 국내외 언론 활동
2.C. 인권, 시민단체 연계 활동 (KNCC, NCC, 민변 등)
3. 사건 연구, 조사 활동 (군문서, 조선인민보, 사단작성계획자료, 한국전쟁사, 1999년 이전 초기 논문 등)
4. 사건 대책위 활동, 유족회 활동 (미국방문, 대책위 성명, 조지얼리 편지 등)
5. 한미양국 정부 조사활동 (조사보고서 2001)
6. 노근리특별법 입법 관련 활동 (2002년 특별법 제정 청원, 2004 특별법 제정)
7. 평화공원 설립, 운영
8. 노근리 관련 문화활동
8.A. 인권캠프, 학술문화제, 평화인권상, 위령제 등 (대책위/평화재단 주최 각종 활동)
8.B. 영화, 문학, 예술, 음악, 만화 등 (기타 주최)
9. 노근리 관련 출판물들
9.A. 관련 기사들 (신문, 방송 등)
9.B. 학술논문 (1999 이후)
10. 기타

연구팀은 <표 2>와 같이 설정한 기록시리즈를 정은용 콜렉션과 정구도 콜렉션 정리의 준거로 삼았다. 이렇게 설정된 질서는 실제 기록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였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이 질서는 진상규명활동의 주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 시기별 분류와 진상규명의 진전되고 확산되는 콘텐츠의 유형을 기준으로 한 내용별 분류로 노근리 기록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기록시리즈의 범위가 겹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면, 노근리 유족회나 대책위의 활동과 노근리와 관련된 문화행사의 내용이 겹쳤는데, 문화행사의 주최자가 유족회나 대책위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두 범주에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분류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록시리즈들이 모든 기록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경우 “10. 기타”의 범주가 활용되었다. 또한 기록 간의 내적 관계나, 전후의 순서 등의 정렬에 대해서는 준거할 어떠한 질서도 찾을 수 없었다. 기록시리즈 하나의 내부 정리는 때로는 연도별로, 때로는 주제별로 정리하였지만, 그것이 내적 질서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다.

#### 4. 맺는 글

본 연구는 원질서 존중 원칙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을 검토하였다. ‘원래’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뜻이 생산 당시인지, 등록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레코드 매니지먼트 단계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질서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생산 기관의 조직을 참고해야 하는지, 기관의 기능과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여러가지 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산 당사자가 아닌 기록인이 과연 원질서를 도출해내고 존중하는 것이 가능한지, 존중하는 질서가 원질서라고 어떻게 확신할지, 원래의 질서라는 것이 고유한 하나의 질서라면, 기록의 맥락에서 특정한 질서를 갖는 상황이 과연 단 한번뿐일지 등 기록학계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개인기록의 경우 원질서 존중원칙은 적용하기 더욱 까다롭다. 기관의 내부 절차와 기능에 의해 생산된 기록이 아닌 개인기록은 원질서를 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원질서 존중원칙의 적용이 어렵다. 진본성을 증명하는 절차와 범주, 파일체계 등을 개인기록에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 범주, 기능, 권한 등 참고할 '질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개인 기록의 원질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이론의 검토를 통하여,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Meehan의 '개념 틀'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그는 기록과 생산 기능과의 외적 관계를 통해 기록들 간의 내적 관계를 고찰해보는 방식으로 원질서를 '개념의 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노근리 기록 간의 내적 관계 및 질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근리 기록의 생산자의 사회적 역할, 기능, 즉 기록과의 외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적 질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방식은 기록시리즈의 범주를 만들어주고 기록이 분류체계 어딘가에 속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시리즈 안에서 기록의 정렬 순서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아마도 생산자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질서로 정리하였을까에 대한 논리적인 추정 정도면 원질서에 가까운 질서를 구현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정렬 방식을 정해 시리즈 내에서 연대기순이나 주제어의 가나다순으로 정했다면 원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을까? 노근리 기록과 같이 원질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기록인이 추측하고 만들어낸 원질서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고민의 시작점에 다시 선게 된다. 원질서 존중 원칙에 대한 기록학과 현장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 전문과정 교육교재. 대전: 국가기록원.  
김상호. 2007. 기록보존론(증보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359-388.
- 설문원. 2003. 조선총독부 기록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457-488.
- 설문원. 2017.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59-117.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이해영. 2013. 기록조직원. 서울: 선인출판사.
- 이호신. 2016. 공연예술기록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담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51-174.
-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파주: 한울.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개정판).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미경, 노영희. 2011.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Barr, D. 1989. Protecting provenance: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escription at the Fonds Level. *Archivaria*, 28, 141-145.
- Bearman, D. 1995. Archival Strategies, *The American Archivist*, 58(4), 380-413.
- Boles, F. 1982. Disrespecting Original Order. *American Archivist*, 45(1), 26-32.
- Brothman, B. 1991. Orders of value: probing the theoretical terms of archival practice. *Archivaria*, 32, 78-100.
- Choi, S., Hanley, C. & Mendoza, M. 1999. War's Hidden Chapter: Ex-GIs tell of killing Korean refugees. *The Associated Press*.
- Cook, T.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2, 18-63.
- Dollar, C. M. 1992. *Archival theor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archival principles and methods*. Macerata University.
- Dooley, J. 1992. Subject indexing in context. *American Archivist*, 55(2), 344-354.
- Douglas, J. & MacNeil, H. 2009. Arranging the self: literary and archival perspectives on writers' archives. *Archivaria*, 67, 25-39.
- Duchemin, M. 1983. Theoret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problems of respect des fonds in Archival Science. *Archivaria*, 16, 64-82.
- Duckett, K. W. 1975. *Modern Manuscripts: A Practical Manual for Their Management, Care and Use*. Nashvill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 Duff, W. & Johnson, C. 2003. Where is the list with all the name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genealogists. *American Archivist*, 66(1), 79-95.
- Eastwood, T. 2000. Putting the parts of the whole together: systematic arrangement of archives. *Archivaria*, 50, 93-116.
- Galloway, P. n.d. Order as received: A foundational virtual order for digital records. Retrieved July 24, 2017 from <https://www.ischool.utexas.edu/~galloway/spring2015/INF392K/OARArchivaria2012v4.doc>
- Gracy II, D.B. 1977. *Archives and Manuscrip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Greene, M., & Meissner, D. 2005. More product, less process: Revamping traditional archival processing. *American Archivist*, 68(2), 208-263.
- Holmes, O. 1964. Archival arrangement—Five different operations at five different levels. *American Archivist*, 27(1), 21-42.
- Horsman, P. 1999. Dirty hands: a new perspective on original order. *Archives and Manuscripts*, 27(1), 42-53.
- Horsman, P. 2002. The last dance of the phoenix or the de-discovery of the archival fonds. *Archivaria*, 54, 1-23.
- Hurley, C. 1995. Personal Papers and the Treatment of Archival Principles. In: *Debates and Discourses: Selected Australian Writings on Archival Theory, 1951-1990*. Peter Biskup, ed. Canberra: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 Huth, G. 2016. Module 13: Appraising digital records. In: *Appraisal and Acquisition Strategies*. Michael Shallcross and Christopher Prom, 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 ISDF. 2007.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Functions*. Dresden, Germany: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Jenkinson, H. 1922.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 Kane, L. M. 1966. *Guide to the Care and Administration of Manuscripts*, 2nd ed. Nashvill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 MacNeil, H. 1994.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between two paradigms. *Archivaria*, 37, 6-20.
- MacNeil, H. 2008. Archivalterity: rethinking original order, *Archivaria*, 66, 1-24.
- Meehan, J. 2010. Rethinking Original Order and Personal Records, *Archivaria*, 70, 27-44.
- Michetti G. 2012. Archives Are Not Tre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in the Digital Age: Digitization and Preservation*. L. Duranti and E. Shaffer, ed. Vancouver: Unesco.

- Miller, F. 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IL: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Muller, S., Feith, J. A. & Fruin, R. 2003.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Translated in 1968 by Leavitt, A.H. and reissued in 2003 b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IL.
- Muller, S., Feith, J. A. & Fruin, R. 2003.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Drawn up by direction of the Netherlands Association of Archivists*. Translation of the 2nd ed. Chicago, IL: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Nesmith, T. 2006. Reopening archives: bringing new contextualities into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ria*, 60, 259-274.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IL: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owell, G. T. 1995. Archival Principles and the Treatment of Personal Papers. In *Debates and Discourses: Selected Australian Writings on Archival Theory, 1951-1990*. Peter Biskup, ed. Canberra: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 Powers, T. E. 1983. Processing as Reconstruction: The Philip A. Hart Senatorial Collection. *American Archivist*, 46(2), 183-185.
- Schaffner, J. 2015. The metadata is the interface: Better description for better discovery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synthesized from user studies. *Making archival and special collections more accessible*, 85. Retrieved July 24, 2017 from <http://www.wip.oclc.org/content/dam/research/publications/2015/oclcresearch-making-special-collections-accessible-2015-a4.pdf#page=92>.
- Schellenberg, T. R. 1961. Archival Principles of Arrangement. *American Archivist*, 24(1), 11-24.
- Smith, C. 1986. A case for abandonment of respect. *Archives and Manuscripts*, 14(2), 154-168.
- Suderman, J. 2002. Defining Electronic Series: A Study. *Archivaria*, 53, 31-46.
- Turner, J. 1992. A Study of the Theory of Appraisal for Selection. MAS The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Yeo, G. 2012. Bringing things together: aggregate records in a digital age. *Archivaria*, 74, 43-91.
- Yeo, G. 2014. Contexts, Original Orders, and Item-Level Orientation: Responding Creatively to Users' Needs and Tehnological Change.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12(3/4), 170-185.
- Zhang, J. 2012. Original order in digital archives. *Archivaria*, 74, 167-193.